JIPYONG NEWSLETTER
법무법인 지평 | 글로벌 비즈니스 뉴스레터
JIPYONG
2017년 9월 제24호

▌최신 해외정보 – 중국 ▐

국무원, 「외자유치 추진 대책 관련 통지」 발표

2017년 8월 16일, 국무원은 「외자유치 추진 대책 관련 통지」(이하 '통지')를 발표하였습니다. '통지'는 외자 진입 제한 축소, 재정 및 세무 관련 지원 정책 마련, 국가급 개발구의 종합적인 투자환경 개선 등 5개 방면, 총 22개의 외자 추진 대책을 제시하였습니다. '통지'에 의하면 외자 진입 시 국민대우와 네거티브리스트를 병행하는 관리제도의 전면 시행, 특수용도차량 및 신재생에너지차량의 제조업에 대한 지속적인 추진, 은행업, 증권업, 보험업 등 영역의 대외 개방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또한 '통지'에 의하면 외국인의 중국 경내에서의 확장 투자를 장려하고, 외국인이 중국 거주자 기업으로부터 배당받은 이익으로 장려류로 분류되는 사업에 투자하는 경우 법정 요건을 충족함을 전제로 과세이연 정책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밖에 과실송금, 외국인투자기업의 지적재산권 보호 제도 보완 등 정책도 시사하였습니다. '통지'는 거시적인 제도 개선의 방향성을 제시한 것으로 시행을 위하여서는 별도의 세부 규정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다만, 해당 통지에서는 이례적으로 각 대책별로 담당 정부 부서를 특정하고 있어 빠른 시일 내에 각 관련 시행 규정이 출시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최고인민법원, 회사법 관련 네 번째 사법해석 공표

2017년 8월 25일, 최고인민법원은 「<중화인민공화국 회사법> 약간 문제에 관한 규정(4)」(이하, '회사법 사법해석 4')를 공표하였고 2017년 9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회사법 사법해석 4'는 결의 효력 하자 관련 소송 제도 보완, 주주의 법정 알 권리에 대한 보호 강화, 주주의 이익배당권에 대한 사법구제 제도 보완, 주주 우선매수권의 행사와 손해 구제에 대한 규범화, 주주대표소송제도 보완을 주축으로 크게 5개 이슈와 관련하여 총 27개 조항으로 구성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지평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 60 KT&G 서대문타워 10층 T. 02-6200-1600 F. 02-6200-0800 E. master@jipyong.com
순천 | 부산 | 상해 | 호치민시티 | 하노이 | 프놈펜 | 비엔티안 | 자카르타 | 양곤 | 모스크바 | 테헤란

국가외국인전문가국과 공안부, 「경외비정부조직(NGO) 외국인 직원의 근무 허가 등에 관한 통지」 발표

2017년 7월 27일, 국가외국인전문가국과 공안부는 연합하여 「경외비정부조직(NGO) 외국인 직원의 근무 허가 등에 관한 통지」(이하, 'NGO 노동 허가통지')를 발표하였고 해당 통지는 발표 당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해당 통지에 의하면, 외국고급인력 기준에 부합됨을 전제로 외국 NGO중국 대표기관의 수석대표는 최장 5년의 근무기간을 허가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중국에 대표기관을 설립하지 아니하고 승인을 받아 일시적인 활동을 진행하는 경우, 외국인 책임자 및 주요 직원의 근무기간은 승인받은 활동기간으로 한정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지평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 60 KT&G 서대문타워 10층 T. 02-6200-1600 F. 02-6200-0800 E. master@jipyong.com
순천 | 부산 | 상해 | 호치민시티 | 하노이 | 프놈펜 | 비엔티안 | 자카르타 | 양곤 | 모스크바 | 테헤란